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실적 자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제출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illegib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6항에 따라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유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사용시간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사용시간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종류	기술 연번	측정기간	총 사용시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1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가.	2025.7.1. ~ 2028.12.31.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2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나.	2025.7.1. ~ 2028.12.31.	00시간	00시간	00시간	00시간

3. "⑫ 종류"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적습니다.
4. "⑬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또는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참고하여 투자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개발 대상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5. "⑮ 측정기간"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⑯ 총 사용시간"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총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을 적습니다.
7. "⑰ 국가전략기술"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
8. "⑱ 신성장·원천기술"란: 해당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봅니다.
9. "⑲ 일반기술 등"란: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을 적습니다.